

2026년 제1회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 공고

남해어업관리단에서 공무원 근로자(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6. 29.

남해어업관리단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예정기관
조리원	1명	· 구내식당 취사·조리업무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조리실 및 식당 위생·환경 관리 · 그 밖에 기관장이 부여하는 업무	남해어업관리단 (제주시 건입동 소재)

* 평일 1식(중식) 배식 예정

** 식사 준비량은 일 평균 약 100인분이며, 식사소요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함

2 보수 등 근무조건

○ (신분)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 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

○ (계약기간) 계약일(8월 초 예정) ~ 정년(만 60세)까지(최초 3개월간 실무수습)

* 수습기간의 복무·급여 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정년일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따름

- (보수)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표준임금 체계 적용

구분	직무 등급	급여액(원)			비고
		기본급	급식비	계	
조리원	2	2,185,890	160,000	2,345,890	※ 2026년 기준금액, 세액공제전 기준

* 별도지급 : ①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 ②초과근무수당 ③퇴직급여 등

- (근무시간) 주 40시간

구분	주당 근무일	근무시간	비고
조리원	5일	08:00~17:00 (1일 8시간, 중식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출·퇴근 시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타 복무 조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 (복리후생)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출·퇴근 지원 및 숙소지원 없음

3 응시 자격

□ 공통 사항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2026. 7. 22.(수)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성별,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군 복무 중 또는 병역의무대상자는 최종시험예정일 이전 기준 병역필, 전역 또는 면제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2008. 6. 29.이전 출생자) 으로 인사관리규정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정년)에 따라 만 60세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인사관리규정(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채용분야	필수요건
조리원	(필수)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응시원서 제출 시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필수 제출

□ **우대요건**(※ 응시인원이 3명 이상일 때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최대 2개 분야의 상위 자격증 각 1개에 한하여 점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장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산업기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기능사 :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

- 조리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관련분야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포함 등)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서류심사 가산점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산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산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서류심사 시 동률이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법정가산점)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제한사항, 가산비율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 **법정 가산점은 채용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본 채용은 미적용)**

※ 위 가점은 항목간 중복가능하며, 합산 후 만점의 최대 15%까지만 인정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시험일정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6.6.29.(월)~ '26.7.10.(금)	'26.7.3.(금)~ '26.7.10.(금)	'26.7.17.(금)	'26.7.22.(수)	'26.7.29.(수)

* 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 및 남해어업관리단 누리집 공고 예정

**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개별 연락)

5

선발 방법

○ 서류전형

- 응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제출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서류전형 기준>

평정요소	배점	비 고
자기소개서	50	- 심사위원 정성평가
우대조건 (자격증사항)	20	- 관련 분야 자격증
우대조건 (경력사항)	30	- 실무경력
우대조건 (사회취약계층/장애인)	가점	* 항목간(사회취약계층/장애인) 중복가능하며, 합산 후 만점의 최대 15%까지만 인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평정요소	평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p>(평정기준) 5개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성적 순 결정</p> <p>* (불합격기준)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p> <p>(순위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차례로 높은 순위 부여</p> <p>* 기파·회피로 인하여 일부 위원의 점수가 무효가 된 경우 집계된 성적의 평균을 전체 심사위원 수로 곱하여 성적 결정, 순위 부여</p>

-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수행의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응시자는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험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해당 시험위원의 점수는 무효로 함

< 시험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

1. 친인척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6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응시원서 교부 : 남해어업관리단 누리집, 나라일터 등 게재(공고문에서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26. 7. 3.(금) ~ 2026. 7. 10.(금)
- 접수처 :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문의처 : 064-780-2408)
※ (우편번호 6328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42-6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이메일, 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7.10.(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하며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 확인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필수)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필수) 응시원서(서식 1)
- (필수) 이력서(서식 2)
- (필수) 자기소개서(서식 3)
- (필수)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4)
- (필수) 응시자 서약서(서식 5)
- (필수)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6)
- (필수)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필수)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식7 양식 참조)
※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일, 발급자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특히 "담당업무" 기재시 "응시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을 것)
 - 폐업 등의 이유로 근무경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유의사항 내용이 모두 기록되지 않거나 별도 양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 증명서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인정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 경력에 대한 4대보험 증명서 중 1부(해당자에 한함)

* 4대보험 증명서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사회취약계층 등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등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 참고 :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

8

기타사항

- 채용 후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해 조리사 면허 취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 반환 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채용되지 못하거나, 채용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남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064-780-2408)

〈 응시자 기본서류 양식 및 편철순서 〉

성명	응시분야
	공무직근로자 (조리원)

□ 작성목록 및 편철순서 (총괄표)

목 록	제 출 여부
※ 공통사항 (필수제출)	
1. 응시원서(서식 1)	(예시) ○, X
2. 이력서(서식 2)	(예시) ○, X
3. 자기소개서(서식 3)	(예시) ○, X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4)	(예시) ○, X
5. 응시자 서약서(서식 5)	(예시) ○, X
6.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서식 6)	(예시) ○, X
7. 건강진단결과(보건증)	(예시) ○, X
8. 주민등록초본 ※ <u>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u>	(예시) ○, X
※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small>* 해당양식이 없는 회사일 경우 서식 7호 사용가능</small>	(예시) ○, X
10.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예시) ○, X
11. 4대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예시) ○, X
1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예시) ○, X
13.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예시) ○, X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서식 제1호>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 제1회 남해어업관리단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응시번호	※ 갑당자 기재	성명	(한글)
채용예정 직명	예시) 공무원근로자(조리원)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2026년 제1회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갑당자 기재	채용예정 직명	공무원근로자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인)			

주의사항

1. 응시원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모든 서류 서명기입 방법 : 예) 성명 남해단 (서명 남해단)**
- ④ 면허·자격증 : 해당 면허·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제출 (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채용 시 필요한 제반 정보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근로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시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학력,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근로자 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남해어업관리단에서 시행하는 공무원근로자 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1. 시험위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채용담당자에게 알리겠습니다.

< 시험위원과의 특수한 관계 >

1. 친인척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 근무경험관계 : 같은 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3. 사제지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만한 친분 등

2.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성명 : (인)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위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응 시 자

(서명)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경력 증명서

근무 업체	상 호 (전 화)	(연락처)	사업자번호	
	주 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근 무 기 간	(예)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직위(직급)	
	담 당 업 무	담당업무를 자세히 기재	근무형태	(예)상근/비상근, 주40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여부	

위 사람이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며, 상기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 (인)

발급자 : (인)

경력확인 가능한 인사(발급자)부서 전화번호 :

메일주소 :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 * 위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시 발급기관 서식으로 제출 가능
- *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발급기관 담당자가 작성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발급기관(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어업관리단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